#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0 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이재정・박지원・이기헌

안태준 · 남인순 · 홍기원

민병덕 • 위성락 • 임호선

민홍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

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음. 특히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,7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.

이에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,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,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# 주요내용

가.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,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 밀히 협력하도록 함(안 제16조의7 신설).

- 나.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,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,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8 신설).
- 다.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 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함(안 제50조의제2항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7부터 제1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7(유관기관과의 협력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은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 ·군수·구청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.
- 제16조의8(사실의 확인 등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 관이나 공공단체, 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 회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현 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 인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

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.

- 1.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
- 2. 실종자의 수색
- 3. 사상자 · 주취자 등의 신원파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
- 4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

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의7(유관기관과의 협력) ①
	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및 소방
	서장은 소방활동을 함에 있어
	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・도지
	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
	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	②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
	<u>수・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</u>
	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
	<u>한다.</u>
	③ 소방공무원 및 국가경찰공
	무원은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를
	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상황
	등이 발생하여 상호 지원이 필
	요한 경우에는 서로 긴밀히 협
	<u>력하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의8(사실의 확인 등) ① 소
	방청장,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
	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하다 인
	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
	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,
	의료기관의 장 등에 소방활동
	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

제50조(벌칙)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있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현 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 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 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② 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 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 면허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 리할 수 있다.

- 1.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의 보호
- 2. 실종자의 수색
- 3. 사상자 · 주취자 등의 신원파
  악 및 인수할 보호자의 확인
  4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
  유지
- 제50조(벌칙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 - ② 제50조의 죄를 범하여 소방 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
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고,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